

부산지방법원 2022. 1. 27 선고 2021나5344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2. 1. 27 선고 2021나53443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1. 5. 13 선고 2020가단337006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

담당변호사 최병주

피고, 항소인 A

변론 종결 2021. 12. 2.

판결 선고 2022. 1. 27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. 5. 13. 선고 2020가단337006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B 사이에 2019. 8. 22. 체결된 상속재산
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,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
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¹⁾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
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
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장병준

판사목명균

판사이순혁

별지

1)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.